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0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 | 2 |



## I. 개요

### 1.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505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칠승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8. 7.
- (3) 회 부 일 : 2026. 8. 10.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u>제11조의2(긴급 의료비 지원) ①</u><br/>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그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u></p> |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지원 금액이 구조행위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의료비(단, 구조행위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한한다)를 반환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

|                                                                                                                                                                                                   |                                                                                                                                                      |
|---------------------------------------------------------------------------------------------------------------------------------------------------------------------------------------------------|------------------------------------------------------------------------------------------------------------------------------------------------------|
| <p>군수·구청장이 행한다.</p> <p>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애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p> | <p>-----.</p> <p>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p> <p>-----</p> <p>-----</p> <p>-----</p> <p>-----</p> <p>-----</p> <p>-----.</p> |
|---------------------------------------------------------------------------------------------------------------------------------------------------------------------------------------------------|------------------------------------------------------------------------------------------------------------------------------------------------------|

## 나. 검토의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하 “의사상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로, 의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일부 의사상자<sup>1)</sup>를 제외하고, 의사상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이, 외래 진료 시에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소액만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1)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의사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의사상자 의료급여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기준 | 인적기준   | • 1~6급 의사상자<br>• 의사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재산기준 | •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절차  |        | • 타법 의료급여 신청(시·군·구 : 의사상자 자격 확인 및 상담신청 등록) → 결정(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개시일 |        |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의사상자법 제11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내용  |        |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br>【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1차<br/>(의원)</th><th>2차<br/>(병원,<br/>종합병원)</th><th>3차<br/>(상급종합<br/>병원)</th><th>약국</th><th>PET 등</th></tr><tr><td rowspan="2">1종</td><td>입원</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td><td>없음</td></tr><tr><td>외래</td><td>1,000원</td><td>1,500원</td><td>2,000원</td><td>500원</td><td>5%</td></tr><tr><td rowspan="2">2종</td><td>입원</td><td>10%</td><td>10%</td><td>10%</td><td>-</td><td>10%</td></tr><tr><td>외래</td><td>1,000원</td><td>15%</td><td>15%</td><td>500원</td><td>15%</td></tr></table> | 구 분                 |                    | 1차<br>(의원) | 2차<br>(병원,<br>종합병원) | 3차<br>(상급종합<br>병원) | 약국 | PET 등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구 분   |        | 1차<br>(의원)                                                                                                                                                                                                                                                                                                                                                                                                                                                                                                                                                                                                                           | 2차<br>(병원,<br>종합병원) | 3차<br>(상급종합<br>병원) | 약국         | PET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의사상자 인정 결정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음<sup>2)</sup>.

2)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실제로 2025년 의사상자 인정의 평균 심사기간은 58일이었고, 인정 신청 23건 중 20건의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신청과 인정 결정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부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 연도별 의사상자 심사 현황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의상자 인정 신청 건수 | 14건  | 24건  | 26건   | 23건   | 23건  | 22건   |
| 평균 심사기간      | 62일  | 22일  | 29.7일 | 49.6일 | 58일  | 36.1일 |
| 심사기간 연장 건수   | 10건  | 7건   | 12건   | 15건   | 20건  | 14건   |

\* 2026년은 8월 신청분까지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 구조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히 그 부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이 실제 치료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사후 의료급여 적용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의상자 인정 신청과 인정 결정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비를 적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상자 인정 여부와 별도로 구조행위와 부상 간의 개연성, 치료의 긴급성, 의료비 지원범위 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의상자 인정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23건의 신청 중 7건(30.4%), 2025년에는 23건 중 5건(21.7%)만 인정되는 등 신청 대비 인정률이 낮은 상황인데,

< 연도별 의상자 인정 현황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의상자 인정<br>신청 건수   | 14건   | 24건   | 26건   | 23건   | 23건   | 22건   |
| 실제 의상자로<br>인정된 인원 | 11건   | 15건   | 16건   | 7건    | 5건    | 7건    |
| 비율                | 78.6% | 62.5% | 61.5% | 30.4% | 21.7% | 31.8% |

\* 2026년은 8월 신청분까지 반영  
자료: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스템

이와 같이 의상자 인정률이 낮은 상황에서 인정 결정 전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사후에 의상자로 인정되지 않아 환수가 필요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환 안내·독촉, 이의제기 및 민원 대응, 체납 시 체납처분 등 환수 관련 업무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 밖에, 개정안의 취지가 의상자 인정 결정 전 치료 공백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별도의 의료비 지원 및 환수 절차를 마련하는 것 외에 의상자 인정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3)</sup>.

3)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심사기간은 각각 22일과 29.7일로, 최근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행위와 부상 간 개연성, 치료의 긴급성, 지원범위 및 다른 제도에 따른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의사자 신청부터 의료비 지원까지의 소요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의사자 불인정률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환수 대상이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급여 적용으로 의료비를 반환받은 의사자에 대해서도 환수가 필요하여 행정비용이 상당 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긴급한 치료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법무부)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긴급 의료비 지원 이후 의사상자 인정이 거부될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환수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환수 사유에 ‘사후 의사상자 인정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추가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처) 의사자 인정여부는 관련법상 60일 이내에 결정되는 점, 구조와 상해 간 인과관계 입증 등 긴급 의료비 지원 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개정실익이 크지 않으며, 최근 의사자 불인정비율이 60%이상으로 잦은 의료비 환수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여 동 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당한 개연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상자 인정 전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의상자 인정은 구조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인정 전 별도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판단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어려움.

의상자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긴급 의료비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환수조치에 대한 불복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반환 안내·독촉, 이의제기 대응, 체납처분 등 후속 업무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97 |